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13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김태년 · 김준형 · 맹성규

이기헌 • 손명수 • 황명선

박균택 • 김태선 • 이훈기

박용갑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(2020헌마1181).

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「형법」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호의4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"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"을 "파면·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3조(결격사유)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			
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		
1. ~ 6의3. (생 략)	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		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	6의4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죄를 저질러 <u>파면·해임되거</u>	<u>파</u> 면 • 해임처분		
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	을 받은 날부터 30년이 지나		
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	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		
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	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		
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	끝난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		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	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		
	집행이 유예 · 면제된 날부터		
	3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7.・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		